

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(2023.04.12.)

조례 **안** 심 사 보 고 서



산업건설위원회

목 차

1	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1
2	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안 4
3	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
4	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
5	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
6	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
7	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
8	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······ 22

-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-- 심 사 보 고 서 -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03. 23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03. 24.

다. 상정일자 : 제270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(04.06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안전총괄과장)

O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,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군민이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군의 안전수준과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함

- O 목적 및 정의를 정함(안 제1조·제2조)
- O 안전보안관 기능·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~제4조)
- O 안전보안관의 임기·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~제6조)
- O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,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7조~제8조)
- O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함(안 제9조~제10조)

- O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제13조·제28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6조의4
- O 예산조치: 2023년 예산 2백만원 확보(활동비 실비보상)
- O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
- O 기타사항
 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입법예고
 - · 예고기간: 2023. 2. 22.~3. 14.
 - 예고결과: 의견 있음(미반영 2건)
 - 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 - 4) 성별영향평가: 반영함(안 제3조)

- 본 조례안은 안전보안관을 위촉하여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, 군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
- O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- 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- 7. 토론요지 : 없음
- 8. 수정안 요지 : 없음
- 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- 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_ 지원 조례안 _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03. 23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03. 24.

다. 상정일자 : 제270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(04.06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안전총괄과장)

○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로 반지하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침수 등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

- O 목적, 정의,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정함(안 제1조~제4조)
- O 지원계획, 실태조사를 정함(안 제5조·제6조)
- O 침수방지시설의 설치지원을 정함(안 제7조)
 - 1) 대상: 공동주택·단독주택, 소규모 상가
 - 2) 범위: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일부

○ 사후관리, 중복지원 제한, 업무의 위탁, 홍보, 협력체계 구축·운영을 정함(안 제8조~1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제13조·제28조, 「지방재정법」제17조
- O 예산조치: 2023년도 예산 24,000천원 확보예정
- O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
- O 기타사항
 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입법예고
 - · 예고기간: 2023. 3. 2.~3. 21.
 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 - 비용추계서: 붙임
 -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 -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: 전부반영

- 본 조례안은 최근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반지하주택이나 지하주차장과 같이 유사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
- O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- 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- 7. 토론요지 : 없음
- 8. 수정안 요지 : 없음
- 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- 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03. 23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03. 24.

다. 상정일자 : 제270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(04.06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환경과장)

○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- O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3조)
 - 현 행: 2023년 12월 31일
 - 변 경: 2028년 12월 31일
- O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례에 따라 정비(안 제4조)

-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, 「낙동 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
- O 예산조치: 2023년도 예산 9,285백만원 확보
- O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
- O 기타사항
 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입법예고
 - · 예고기간: 2023. 2. 27.~3. 20.
 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 - 비용추계서: 붙임
 -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-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로 만료됨으로 이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기 위한 것으로
- O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- 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- 7. 토론요지 : 없음
- 8. 수정안 요지 : 없음
- 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- 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_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_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03. 23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03. 24.

다. 상정일자 : 제270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(04.06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과장)

○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그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O 인용 상위법명 개정사항 반영(안 제1조·제2조)
 - 현행: 「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 - 변경: 「댐 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O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3조)

- 현행: 2023년 12월 31일

- 변경: 2028년 12월 31일

O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례에 따라 정비(안 제1조·제5조·제6조)

-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, 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5조
- O 예산조치: 2023년도 예산 712백만원 확보
- O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
- O 기타사항
 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입법예고
 - · 예고기간: 2023. 3. 3.~3. 21.
 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 - 비용추계서: 붙임
 -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-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로 만료됨으로 이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기 위한 것으로
- O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- 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- 7. 토론요지 : 없음
- 8. 수정안 요지 : 없음
- 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- 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03. 23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03. 24.

다. 상정일자 : 제270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(04.06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과장)

○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주차환경개선 사업 등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그 존속기한을 연장 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- O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2조)
 - 1) 현행: 2023년 12월 31일
 - 2) 변경: 2028년 12월 31일
- O 세출 삭제함(안 제4조)
 - 1) 근거: 「주차장법」 제21조의2제4항
 - 2) 내용: 전국적 통일을 위해 특별회계 용도 신설
- O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례에 따라 정비(안 전 조문)

- 관계법령:「지방재정법」 제9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, 「주차장법」 제21조의2
- O 예산조치: 2023년도 예산 479백만원 확보
- O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
- O 기타사항
 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입법예고
 - · 예고기간: 2023. 2. 27.~3. 20.
 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 - 비용추계서: 붙임
 -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 -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: 전부반영

-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로 만료됨으로 이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기 위한 것으로
- O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- 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- 7. 토론요지 : 없음
- 8. 수정안 요지 : 없음
- 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- 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_ 일부개정조례안 _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03. 23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03. 24.

다. 상정일자 : 제270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(04.06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농업축산과장)

○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거창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와 지원을 위하여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O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4조)

1) 현행: 2023년 12월 31일

2) 변경: 2028년 12월 31일

O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례에 따라 정비(안 전 조문)

- O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,
- O 예산조치: 2023년도 예산 3,750백만원 확보
- O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
- O 기타사항
 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입법예고
 - · 예고기간: 2023. 2. 28. ~ 3. 20.
 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 - 비용추계서: 붙임
 -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-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로 만료됨으로 이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기 위한 것으로
- O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- 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- 7. 토론요지 : 없음
- 8. 수정안 요지 : 없음
- 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- 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03. 23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03. 24.

다. 상정일자 : 제270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(04.06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행복농촌과장)

○ 귀농세대 지원 나이를 확대하여 노후를 거창에서 귀농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적극 유인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- 용어의 정의 변경(안 제2조)
 - 귀농인: 법령을 인용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정의함
 - 귀농세대
 - 현 행: 농지원부에 등재된 20세 이상 60세 이하
 - · 변 경: 20세 이상 65세 이하
 - · 「농지법」 개정으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, 등록대상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가 귀농인 확인 서류로 부적합하여 삭제
- O 법령 재기재사항 등 정비(안 제19조, 제1장~제4장)

- O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제13조·제28조, 「지방재정법」제17조
 -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O 예산조치 : 2023년도 예산 300백만원 확보
- O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
- O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O 입법예고
 - 예고기간 : 2023. 03. 03. ~ 03. 21.
 -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O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O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- 본 개정 조례안은 귀농세대의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상향 하여 이를 통해 노후에 거창에서 귀농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적극 유인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삭제함으로써 귀농에 편의를 주기 위 한 것으로
- O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- 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- 7. 토론요지 : 없음
- 8. 수정안 요지 : 없음
- 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- 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─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─ — 심 사 보 고 서 ──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03. 23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03. 24.

다. 상정일자 : 제270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(04.06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행복농촌과장)

○ 외식업소 육성을 위한 행정·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식업소 및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- O 목적, 정의,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(안 제1조~제3조)
- O 외식업소 지원계획을 정함(안 제4조)
- O 외식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 (안 제5조)
- O 외식업소 지원대상을 규정함(안 제6조)
- O 외식업소 중복지원 제한을 정함(안 제7조)
- O 대표음식, 대표음식점 선정을 정함(안 제8조)
- O 외식업소 육성위원회 기능·구성 등을 정함(안 제9조~제16조)
- O 명칭사용의 금지, 사후관리 등을 정함(안 제17조·제18조)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·제28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- O 예산조치: 2023년도 예산 151백만원 확보
- O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
- O 기타사항
 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입법예고
 - · 예고기간: 2023. 3. 2.~3. 21.
 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 - 비용추계서: 붙임
 -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- 본 조례안은 군의 대표음식 개발 및 대표음식점 선정 등 차별화된 군의 외식업소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
- O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- 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- 7. 토론요지 : 없음
- 8. 수정안 요지 : 없음
- 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- 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